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85

발의연월일: 2020. 12. 11.

발 의 자:서영석·강민정·강병원

강선우 · 고영인 · 김성주

김승원 · 문진석 · 오영화

인재근 · 최종윤 · 최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에 의해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법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종사하여야 함에도 공중보건의사에 의한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개인의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는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로 인해지역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

렵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9조의2).

법률 제 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 중"을 "제1호부터 3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이내에"를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로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른다.

-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 당한 경우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①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①
공중보건의사가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3조
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	
실한다. <u><단서 신설></u>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
	조 단서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u><</u> 삭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른다.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	<u><</u> 삭 제>
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경	
<u> </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2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분	
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u>제1</u>	<u>제1</u>
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호부터 3호까지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	
탈하여야 한다.	

<신 설>

<u>1. · 2.</u> (생 략)

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1년 4. ------이내<u>에</u> 직무에 복귀할 수 없 경우

<신 설>

<신 설>

-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 <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중 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 이 부적당한 경우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 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 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